

위탁판매 재방송조건 협약서

본 협약서는 심야방송에 의한 재방송을 위한 방송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된 것임.

주식회사 씨제이엔엠(이하 "CJ"라 한다)과 XXXX(이하 "협력사"라 한다)은(는)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위탁판매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부속하여 방송 등을 통한 위탁판매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한다.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계약에 따른다.

제 1 조 [협력사 정보]

협력사명	협력사코드	판매매체
------	-------	------

제 2 조 [방송 시간]

방송일시	프로그램명
------	-------

- ① 방송일시는 판매상품이 포함된 전체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대(SB Time 포함)로서 전체 프로그램내에서 판매상품은 복수일 수 있다.
- ② 동일 방송시간 내에 2 개 이상의 협력사가 방송하는 경우 해당 방송시간을 업체수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어 할당하며 방송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방송 중 판매효율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할당된 방송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 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방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거래 조건]

번호	판매 코드	판매 상품명	판매가 (원)	거래 형태	배송 주체	정액수수료 (만원)	정률수수료		임의 반품 기간
							TV 방송 수수료율 (%)	eTV 등 수수료율 (%)	

<정률수수료는 VAT 포함, 정액수수료는 VAT 별도임>

※ 판매상품은 “협력사” 소유로서 “CJ”는 판매위탁수량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① 본 협약서에 따른 거래조건은 상품의 판매재고가 있고, “CJ”의 방송편성상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력사의 사전동의하에 긴급편성되는 재방송, 심야재방송, 도깨비찬스 시간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본 협약서에서 수수료는 “협력사”가 “CJ”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의미한다.
- ③ 본 협약서에서 정률수수료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되 TV 방송 수수료는 본 판매방송 에서 고지하는 주문번호를 통해 주문한 총 판매액에 적용하며, eTV 등 수수료는 본 판매방송을 활용한 인터넷(예: eTV) 등 타매체에서 미리주문, 실시간주문, 지난방송보기 등을 주문한 총 판매액에 적용한다.

- ④ 판매수량은 협력사가 상품 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파트너시스템 등)에 입력한 내용에 따른다.
- ⑤ 방송제작비는 “CJ”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섭외하거나 제작한 게스트 또는 상품설명자료(VCR, 손판넬 등)등을 방송에 사용할 것을 “CJ”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방송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CJ”는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본 항에 따라 샘플을 수령한 경우 샘플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소모성 상품의 경우에는 “CJ”가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가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 예정가 또는 동종 유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판매가로 한다.
- ⑦ 전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 목적 및 방송 프로그램 시연 목적으로 “CJ”의 요청시 “협력사”는 이에 필요한 판매상품의 샘플을 제공한다.

제 4 조 [프로모션]

번호	유형	상품코드	상품명	분담 내역 및 비율

- ① 양 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프로모션은 상품 판매 시 마다 적용되는 조건으로서 예상비용 및 이익을 산정할 수 없음에 동의하며 다만, 그 분담비율은 “CJ”와 “협력사”에게 예상되는 경제상 이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본 조에 따른 “협력사”의 분담비율은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사의 비용부담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50 을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초과분은 “CJ”가 부담한다.
- ③ 본 조 2 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본 조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조의 프로모션은 매출증대를 위해 “CJ”와 협력사 간 상호합의하여 진행하는 건으로, 분담내역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CJ”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 ⑤ ARS 할인 프로모션은 TV 방송에 적용하며, eTV 등에서 판매시에는 ARS 할인 프로모션 조건을 할인쿠폰이나 즉시할인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⑥ 본 조의 프로모션은 방송시간 포함하여 방송시간 외에도 운영하며, 합리적인 사유 발생 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협력사의 전문 보조인력 사용]

- ① 게스트 모델 방청객 기타 보조인력 등 방송 제작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CJ”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CJ”가 전액 부담한다.
- ② 본 조 1 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협력사” 상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전문 보조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보조인력 수, 업무내용, 분담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약정하여야 한다

번호	유형		인력(명)	업무내용	CJ(%)	협력사(%)	비고
1	게스트	연예인		방송에서 특수 판매기법등 전문적인 상품 설명		[협력사분담]	
		판매전문가					
		협력사대표					

		협력사직원					
2	기타 전문보조인력		전문적인 상품관리업무		[보조협력사 분담]		

- ③ "협력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인력이 본 조 2 항의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CJ"는 "협력사"가 보조인력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용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한 서면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조에 따른 파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협력사" 보조인력의 근무기간 및 시간은 제 2 조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심의 준수]

양 당사자는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체결하는 심의규정 준수협약서에 따른다.

제 7 조 [특약사항]

“CJ”와 “협력사”는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음에 동의한다. 단, 본 협약서의 각 조건이 상호 합의한 사항과 다른 경우 협력사는 본 협약을 반려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20XX년 XX월 XX일

“CJ”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대표이사 윤 상 현 (인)

“협력사”

주소:
상호 :
대표이사 :: (인)